

'93년도 에너지절약 시설 자금 지원 방향

글/고 광 석 (동력자원부 에너지관리과)

1. 지원배경 및 개요

제 2차 석유파동에 따른 유가상승의 지속으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인식에 점차 변화를 가져오면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은 행정규제에 의한 단순 소비억제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지원에 중점을 두어 '80년부터 산업체 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 기금과 일반 금융자금으로 지원을 시작하였고, 석유사업기금은 '83년도부터 지원개시하여 '86년부터는 주된 지원재원이 되었다. 그 주요 지원대상은 지역난방, 공업단지 열병합발전, 산업체 절약시설 설치 및 생산, 주택 단열 개수, 기술개발 연구 및 실용화 사업 등으로서 '92년까지 총 15,187억원(은행 및 재투자금 포함)은 20,868억원)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을 지원하였다.

2. '9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운용방향 및 지원 보완 내용

가. 기본방향

- 1) 올해를 『에너지절약의 기반확충의 해』로 삼아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에너지다소비업체(대기업)의 설

비개체 우선지원 및 에너지다소비업체의 과잉설비투자 억제를 병행

- 2) 산업부문에외에 수송, 건물분야의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소비부문별 지원의 균형유지
- 3)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절약기술개발 실용화, 고효율제품 생산보급 및 장려금 지급 등 에너지절약 시책과의 지원연계 강화
- 4) 안정적이며 계획적인 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 규모의 지속적 확대 추진

나. '93 기금지원보완 내용

1) 신규 지원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석유사업기금	· 건물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용자 (중소기업한함)(빙축열, 가스 냉방기, 자동조명제어, 절수 설비 등)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 선박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용자 (대기업 포함) · 건물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용자 (대기업 포함)

2) 용자대상 보완

- '90년 이후 중단되었던 대기업에 대한 지원재개로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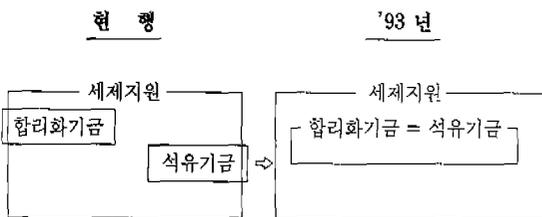
공지사항

-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신설업체 및 시설의 신·증설 지원은 제외하고 시설개체만 지원
- 3) 용자조건 개선
 - 중소기업은 석유사업기금에서 5% 금리에 용자비율 90% 이내 지원으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대기업은 에너지융합리화기금에서 10% 금리에 용자비율 60% 이내로 차등화
 - 수입기계의 경우 별도의 외화대출이 가능하므로 대기업 40% 이내, 중소기업 60% 이내로 용자비율을 낮게 적용
 - 공업단지 열병합 발전사업자는 '92년 90% → '93년 80% 이내로 용자비율 조정
- 4) 지원대상시설의 체계화 및 기준 단일화
 - 에너지절약효과는 종전시설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며, 절약효과 10%와 20%의 객관적 구별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기준을 절약효과 10%로 단일화하여 세제지원대상기준(10%)과 균형을 유지함.

<'92년> <'93년>

- 석유사업기금 절약효과 20% ⇨ 절약효과 10% 이상의 에너지 절약시설 이상의 에너지 절약시설로 단
- 에너지융합리화기금 절약효과 10% 일화 이상의 에너지 절약시설

- 현행 지원시설중 지원필요성이 적어진 설비는 제외하고 신규우수설비를 추가함



<지원대상시설의 체계화>

- 5) 용자한도 강화
 - 당해년도의 용자한도는 종래 중소기업 5억원 이내에서 10억원이내로, 신규지원의 대기업은 20억원(건물, 선박은 5억) 이내로 확대하되
 - 투자회수기간이 과도하게 긴 설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별도의 용자한도기준을 【용자시설의 연간 에너지 절감예상액 × 10】의 금액이내로 신규 설정함으로써 시설투자 지원의 비용경제성 확보
- 6) 지원절차 개선
 - 종래 재원의 100% 한도내에서 용자추천 하였던 것을 용자포기율을 감안, 110% 한도내로 초과 추천토록 함으로써 자금의 불용을 사전 예방함
 - 당해년도 용자추천이 완료되더라도 신청 접수를 마감하지 않고 예비접수 명단을 확보함으로써 추가지원에 대비하고 추가 수요 동향 파악
 - 기술개발분야 용자추천은 법정 전문관리기관(대체에너지센터)에서 수행토록하여 기술개발지원의 체계화 및 일관성 도모

3. 지원사업 내역

가.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1) 용자

【석유사업기금】

사업명	세부사업	분 야	지원금액 (억원)	지원자금	비 고
에너지융합리화사업	집단에너지공급	○ 신도시 지역난방	605	시설자금	
		○ 서용시 지역난방	54	시설자금	
		○ 공업단지 열병합발전	320	시설자금	
		소 계	979		
절약시설설치		○ 산업체 절약시설	310	시설 및 운전자금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30억포함
		○ 주택단열개수	30	시설자금	별도세부

사업명	세부사업	분 야	지원금액 (억원)	지원자금	비 고
		○ 건물절약시설	44	시설자금	지침에 따라 지원
		소 계	384		
		계	1,363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 연구개발	30	연구자금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용자절차에 따름
		○ 실용화	-	시설 및 운전자금	
합 계			1,393		

【에너지융합리화기금】

사업명	세부사업	분 야	지원금액 (억원)	지원자금	비 고
에너지융합리화 사업	절약시설 설치	○ 산업체절약시설	180	시설자금	
		○ 건물절약시설	15	시설자금	
		○ 수송절약시설	15	시설자금	
합 계			210		

2) 보조

【석유사업기금】

사업명	세부사업	분 야	지원금액 (억원)	지원자금	비 고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 연구개발	30	보조	별도세부지침에 따라 지원

나. 용자지원대상자

1) 용자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고, 용자지원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음.

사업명(분야)	용자 지원 대상자	비 고
○ 집단에너지공급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	
○ 절약시설설치 - 산업체 절약시설	○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개제 하고자 하는 자 및 생산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제외하고 절약시설 설치

사업명(분야)	용자 지원 대상자	비 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 에너지융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된 자	사업에 대한 석유사업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비영리공익법인 및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포함
- 건물 절약시설	○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개제 하고자 하는 자*	
- 수송 절약시설	○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개제 하고자 하는 자*	
○ 에너지절약기술개발	○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개제 하고자 하는 자*	○ 절약시설생산에 대한 지원
- 연구개발	○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 운용규정에 의거, 선정된 연구사업 수행자	은 석유사업기금에 한함
- 실용화	○ 상기 연구결과 및 기타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생산하고자 하는 자	

주 * : 시설의 개체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으로함(단, 동일사업장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행정명령에 의거 부득이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금융기구나 여신운용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여신금지부문업종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숙박, 음식점, 육탕업종에 해당하는 자는 용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중·대형건물의 에너지절약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은 예외로함.

4. 기금재원별 용자조건

가. 시설자금

【석유사업기금】

사업명(분야)	용자비율	이자율	상환기간	당해년도 용자한도
○ 집단에너지공급	소요자금 90% 이내 (공업단지 열병합 발전은	연리 8% 이내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내	-

공지사항

사업명(분야)	융자비율	이자율	상환기간	당해년도 융자한도
○ 산업체 절약시설	80% 이내) 소요자금 90% 이내(수입 이내 기자재는 60% 이내)	연리 5% 이내	3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내	동일사업자당 10 억원 이내.(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은 예외로 함)
○ 건물 절약시설	소요자금 90 % 이내	연리 5%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내	동일사업자 당 5억원 이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명(분야)	융자비율	이자율	상환기간	당해년도 융자한도
○ 산업체 절약시설	○ 대기업 : 소요자금 60 % 이내(산업 채의 경우 수입 기차재는 40 % 이내)	연리 10%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내	동일사업자당 20억원 이내
○ 건물 절약시설				동일사업자당 5억원 이내
○ 수송 절약시설				동일사업자당 5억원 이내

※ 중소기업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우선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서 추가지원

나. 운전자금

【석유사업기금】

대 상	융자비율	이자율	상환기간	당해년도 융자한도
○ 절약시설 생산자	소요자금의 70% 이내	연리 10%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이내	동일사업자당 3억원 이내
○ 절약기술 개발실용화 생산자	소요자금의 70% 이내			동일사업자당 3억원 이내
○ 에너지 절약전문 기업창업	1억원 정액 지원			동일사업자당 1억원 이내

5. 융자범위(소요자금)

가. 시설자금

-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

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하며,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관세 등), 토지구입비,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함.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이 납입자본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함)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시설 부지매입비를 포함함.

나. 운전자금

- 당해제품의 연간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 기준, 1회전 소요자금에 한함. 다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창업지원은 정액지원으로 함.

6. 융자취급기관

- 가. 석유사업기금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 나.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시중은행

7. 융자신청

- 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 사업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융자추천을 받고, 융자추천일로부터 30일내에 융자취급기관에 융자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나. 공단은 당해년도 융자추천 완료후에도 예비 융자추천 신청을 받아 당해년도 추가 지원시 또는 익년도 지원시에 우선 융자추천함.
- 다. 석유사업기금의 경우 대여기관이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은 공단의 융자추천을

받아 대여기관에 직접 용자를 신청하여야 함.

8. 용자대상시설 내역

구 분	용자지원 대상시설	비 고
I. 집단에너지 공급		
1. 지역난방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주거 및 상업 지역 등에 대한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2. 공업단지 열병합 발전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공업단지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II. 고효율 제품생산	○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직접 비교시험(측정)한 결과 단위제품이 동일 종류제품 보다 에너지 절약효과가 10% 이상(전기의 경우 5% 이상)이라고 인정하고 에너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III.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1. 창업지원	○ 에너지절약 전문 기업창업에 필요한 소요자금	-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내인 자에 한함
2. 투자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에너지절약 투자	

구 분	용자지원 대상시설	비 고
IV. 에너지 절약형 시설설치		
1.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1) 폐열이용 교환 장치 2) 폐열이용 가열 장치 3) 폐열이용 보일러 4) 흡수식 냉온수기 5) 흡착식 냉수 제조장치 6) 열교환식 용제 회수장치 7) 폐압력이용 발전장치 8) 폐열이용 발전장치 9) 공정폐가스 이용장치 10) 잉여열이나 공정발생열을 회수하여 타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	- 폐열회수기, 전열교환기, 히트파이프식 열교환기에 한함. - 원료예열, 온수가열, 공기예열장치에 한함. - 폐가스열 또는 폐수열 등 폐기에너지를 주열원으로 하는 것이나 직화식의 것 단, 직화식의 것은 흡수액을 냉온수기의 순환과정에서 2회 이상 재생하는 것. - 폐열로써 냉수를 제조하는 것. - 분리용제 발생증기에서 용제를 회수하고 열교환으로 투입하려는 용제 등을 예열하는 것.

공지사항

구 분	융자지원 대상시설	비 고
2.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가.요로	1) 유리용해로 ○ 에너지절약형 용해로 ○ 직접통전식 유리용해로 ○ 고성능 Forehearth 2) 유리원료처리 장치 ○ 유리원료 예열 장치 3) 소성 킬른 (킬른 및 폐열 회수 장치에 한함) ○ 롤러허스(Roller Hearth) 터널 킬른 ○ 상부연소식(Top Firing) 킬른 ○ 하부연소식(Under Firing) 터널 킬른 ○ 벨 킬른 4) 금속용해로 ○ 배가스폐열회수형 세라믹재 도금 용해로 ○ 배가스폐열회수형 금속 용해로	- Separated Refiner, Submarine(또는 Deep) Throat 및 가열면적이 15.5㎡/㎡ 이상의 축열기 또는 환열기 등을 겸비한 것 - Roof가 Mono Block 구조로 냉각공기가 종방향으로 흘러 온도분포가 균일하고 조절이 가능한 것. - Pelletizing 장치 - Pelletized Batch Preheater - 대차를 사용하지 않고, 소성품을 롤러에 의해 운반하는 킬른 - 제품간에 연소실이 있는 것.

구 분	융자지원 대상시설	비 고
	○ 전기유도용해로 (주파수 150Hz 이상의 것) 5) 가열로 및 열처리로 ○ 배가스폐열회수형 롤러허스형 가열로 ○ 연속자동 열처리로 ○ 진공이온질화 열처리로 ○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나. 연속압연, 압출 및 주조 장치 등 1) 압연장치 ○ 튜브냉간압연기 (Cold Reducing Tube Mill) 2) 주조장치 ○ 연속주조장치 3) 압출장치 ○ 연속압출장치 4) 알루미늄 용탕 교반장치 다. 열색 및 섬유가공 장치 1) 전처리 (정련, 수세, 감량, 표백) 장치 ○ 증기 충격식의 것. (Shock Steam) ○ 정련, 표백을 동시에 처리 하는 것. ○ WET-ON-WET 정련 가공을 위한	- 에너지관리기준상의 표준폐열회수율 이상의 것. - " - 금속에서 인발, 압연을 반복하던 시스템을 1 Pass로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것. - 금속을 용해하여 빌렛제조, 균질처리, 절단 및 가열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연속압출하는 설비 - 전지식 또는 진공식 용탕 교반장치에 한함.

구 분	융자지원 대상시설	비 고
	가성소다 농도 자동 제어장치 ○ 밀폐식 연속수세 장치 ○ 솔벤트 정련 또는 솔벤트세정장치	- 수세온도가 자동 조절되는 것.
	2) 염색장치 등 ○ Air flow 염색기 등	- 기계(풍기, 증기 등) 역학방식에 의해 피염을 운송시키는 구조의 염색기
	○ 거품염색(가공) 장치 ○ Cold Pad Batch 염색장치 ○ Wet-On-Wet 방식염색장치	
	3) 가공장치 등 ○ 에너지절약형 히트 셋팅기	- 내부온도에 따라 가열장치의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배기열 습도를 감지하여 배기량을 자동조절 가능한 것.
	○ 직류전자 염색 가공기	- 섬유자체에 직접 통전시켜 염료의 물로 습윤된 섬유의 전기 저항에 의한 발열을 이용하여 직접 가열하는 방법으로 염색 및 고온스티머도 이용 가능한 것.
	○ 무장력 연속 스티머 ○ 초음파이용 부직포접착기	- 초음파에 의한 진동과 마찰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융착시키는 장치
라. 증발, 농축 및 건조장치 등	1) 증발, 농축장치 ○ 충격유하식 증발 농축장치	

구 분	융자지원 대상시설	비 고
라. 증발, 농축 및 건조장치 등	○ 액막유하형 증발관 ○ 증기 재이용 진공증발관 ○ 증기 재압축식 증발관	- 펌프액 또는 농축액 등을 막상으로 자연유하시켜 농축하는 설비
	2) 건조장치 ○ 가열분무 건조장치	- 에너지절약형 3단 방식 가열분무건조기로서 스프레이, 유동층 건조를 복합하여 열원을 3단계로 투입하는 것.
	○ 히트펌프식 건조기	- 압축식 히트펌프의 저온흡열 및 고온배출 특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건조장치로서 건조환마, 제습기, 히트펌프, 순환팬 등 포함.
	○ 스펀후레쉬 건조기	- 페이스트, 왈더레이크, 슬릿지 등 고형분의 피건조물이 열풍과 직접 접촉되면서 건조되고 수분이 함유된 피건조물의 덩어리는 자체에 부착된 교반기에 의해 분쇄되는 것.
	3) 고성능 분리장치 ○ 전해장치	- 이온교환막법에 한함.
	○ 막분리방식을 이용한 농축장치	- 한외 여과 또는 역삼투방식에 의한 농축장치
	4) 에너지절약형 종류답 ○ 팍킹타워를 이용한	- 관형 분리탑을 충전

공지사항

구 분	응자지원 대상시설	비 고
마. 탈취 및 주정제조 장치	중류탑	물에 의한 분리탑으로 내부를 개조하거나 신설한 것.
	1) 탈취탑 및 장치 ○ 박막이용 현열 회수형 탈취탑	- 탈취공정에 설치된 탈취탑으로 원료나 제품의 현열을 이용하는 것(Thinfilm식 탈취트레이, 탑 및 제어장치, 진공장치 등 포함)
바. 제지공정의 절약시설	2) 주정발효 및 증류, 정제시설 ○ 연속발효 및 증류, 정제시설	- 발효 Mash를 증자, 당화 및 발효의 각종 단계 연속적으로 보내어 증기열, 살균희수를 대폭줄인 시스템 (기존 회분식을 연속화 한 것에 한함)
	1) 해리 및 정선 장치 ○ 고농도 펄퍼 ○ 장·단 섬유 분리장치 ○ 중농도 정선 스크린	- 지료농도를 10% 이상으로 해리시킬 수 있으며, 농도의 자동조절이 가능한 펄퍼 - 장·단섬유를 분리하여 장섬유만 고해하므로 고해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치 - 지료를 회석없이 3-4%의 농도로 정선처리 하므로 농축공정이 불필요한 설비
	2) 탈수장치 ○ 면압 탈수장치	- 면압 탈수 너비가 200mm이상인 것으로 유압 및 진공장치

구 분	응자지원 대상시설	비 고
사. 고성능 유제기기 및 제어장치 등	○ 고압 탈수장치	등 포함 - 선압이 350kg/cm 이상인 것으로 압력 및 유인장치 등 포함
	○ 스팀박스	- 제지공정에서 탈수 공정에 설치한 스팀 Shower System
아. 산업체 열병합	3) 건조시스템 ○ 초저건조기의 밀폐 후드 및 배열회수 장치	- 안전밀폐로 배열 회수 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노점온도가 58℃이상으로 설계된 것.
	1) 고성능 유제기기 ○ 원심식 다단진공 펌프	- Seal Water가 불필요하고, 모터속도에 관계없이 진공조절기에 의해 공기향이 자동조절 되는 것.
아. 산업체 열병합	2) 속도제어장치 ○ 메카니칼(Mechanical) 속도제어 장치	- 유제기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컨트롤 장치 포함.
	3) 에너지절약형 전기 사용 설비 ○ 터빈구동식 동력 장치 ○ 전력부하 조절 장치	- 펌프, 송풍기, 압축기에 한함. - 전력수요 제어장치 및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제어장치에 한함.
	4) 스팀아쿠뮬레이터	- 보일러 부하변동의 안정화를 위한 증기 저장 및 자동공급 장치
	5) 히트펌프	
	6) 압축기	- 스크류, 터보 타입에 한함.
	○ 전기사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	

구 분	음자지원 대상시설	비 고
3.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발전시설 한 것으로 자가용에 한하며 열전비가 1.0 이상인 설비	
	1) 히트펌프	
	2) 건물자동화 제어 장치 ○ 건물의 실내온도 제어장치 ○ 건물에너지절약 관련 자동운전 제어장치	— 수배전 관련설비, 열원설비, 공조관련 설비(단, 에너지절약 과 관련 없는 제어 장치 제외)
	3) 자동조명 제어 장치	
	4) 전력부하 조절 장치	— 전력수요 제어장치 및 주파수 변환식 회전 수제어장치에 한함.
	5) 동절기 냉열을 이용한 드라이블러	— 외기에 의한 열교환 으로 냉방하는 방식일 것. 단, 냉동기는 제외
	6) 건물 열병합발전	— 전기사업법에 의거 공사 계획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로서 열전비가 1.0이상인 설비
4. 수송에너지 절약설비	7) 스팀 이큐물레이터	
	1) 선박 에너지절약 기기 ○ 연료유 개질장치	— 동일선박에 다음 각 시설중 2종 이상을 동시에 개제하여 에너지절약 효과가 1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초음파 연료유 개질 장치, 중질유고형물 분쇄장치, 연료유 혼합장치 등 중질유

구 분	음자지원 대상시설	비 고
5. 전력수요 관리설비	○ 추진효율증진 장치 및 재료	및 슬러시 입자를 미세화하여 연소효율을 높이는 장치 — 선미조파 경감장치, 에너지절약형 추진장치, 추진기효율개선장치, 선체마찰저항감소를 위한 특수방오도장 등 추진 효율증진에 의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장치
	○ 자동항법 장치	— 위성항법 장치, 자동 조타장치 등 직진항해에 의한 에너지소비 효율을 높이는 장치에 한함.
	○ 열효율 개선 장치	— 추진축동력 발생 장치, 자동연료분사 조정장치, 폐열회수 장치, 보일러, 노후류브 교체, 노후과급기 및 펌프 등의 교체
1) 축열식 냉방기기 (열원장치에 한함)		○ 축냉(빙축열 또는 수축열) 방식의 냉방 또는 냉장설비로서 정격소비 전력합계가 30kW 이상인 것. (전용배관 펌프 열 교환기축열조 포함) 단, 냉동기는 제외.
	2) 흡수식 냉온수기	○ 폐가스열, 폐수열 등 폐기에너지 및 집단 에너지를 주열원으로 하는 것이나 직화식의 것 단, 직화식의 것은 흡수액을 냉온수기의 순환과정에서 2회 이상 재생하는 것

구 분	용자지원 대상시설	비 고
6. 기타설비	3) 역률자동조절 장치	- 교류전력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치를 조정하여 역률을 개선하는 것.
	4) 최대 수요전력 감시 제어장치 (디멘드 감시제어장치)	- 최대 수요전력을 제어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제어장치에 한함.
V.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사업	○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직접 비교시험(측정)한 결과 단위설비가 동일 종류설비보다 에너지 절약효과 10% 이상(잔기의 경우 5% 이상) 이라고 인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설비의 설치	○ 새로이 개발된 에너지절약기술을 이용한 설비로서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직접 비교시험
1. 연구개발	○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사업 운용규정에 의거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약체결한 자에 한함.	
2. 실용화	○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운용규정에 의거 기술개발한 결과중 에너지지원기술개발 지원센터 소장이 건의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이용한 설비의 설치 및 생산	-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종료후 2년간 - 국산기술개발의 경우

구 분	용자지원 대상시설	비 고
	지절약기술을 이용한 설비로서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직접 비교시험(측정)결과 단위설비당 에너지절약효과가 10%이상(잔기의 경우 5%이상)이라고 인정하며, 에너지지원기술개발지원센터 소장이 건의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설비의 설치 및 생산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거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 신청을 한것에 한하며 특허출원 공고일(실용신안 출원공고일)로부터 3년간(또는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출원 신청일로 부터 4년간)
		- 외국에서 도입되는 기술의 경우 도입계약에 의한 것에 한하며, 국내 최초의 것으로 부터 2년간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2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지원기간 이내

**전기절약
365일**

